

# 인지세 납부 안내

## 인지세 안내

부동산 옵션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의거하여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각각 1/2씩 부담하여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정부수입인지 납부 후 반드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불실 시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참고바랍니다.

## 인지세 납부 안내

|            |   |  |
|------------|---|--|
| 과세 대상      | ※ 관련법령 :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,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<br>- 인지세법상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과세 대상임<br>- 계약 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친 때 계약서 별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함 |  |
| 납부 방법 및 기한 | - 옵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|  |
|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| 오프라인  | 우체국, 은행(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)   |
|            | 온라인   | 전자수입인지( <a href="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">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</a> )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|

## 인지세 납부액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간                | 사업주체 부담(50%) | 계약자 부담(50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<br>(옵션공급계약서) | 1천만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 | 1만원          | 1만원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 | 2만원          | 2만원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 | 3만5천원        | 3만5천원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 | 7만5천원        | 7만5천원       |

##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안내

**1 해당 홈페이지 접속** → 전자수입인지([www.e-revenuestamp.or.kr](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))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 「전자수입인지」 검색

###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



### 4 구매 - 납부정보입력

- ① 용도 : 인지세 납부
- ② 과세문서 종류 : **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**
- ③ 금액 : **1만원, 2만원, 3만5천원 또는 7만5천원**
- ④ 건수 : **1건**
- ⑤ 확인 및 결제

### 3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로그인 후 구매



### 5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**1회에 한하여 출력**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, 테스트출력 요망)



전자수입인지 구매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.